

행정처분의 세부 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된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을 주어야 하고,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차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.

마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중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, 사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6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7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법령	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	법 제38조의2 제1항제1호	경고	사업장 폐쇄 명령		
나.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	경고	사업 정지 15일	사업 정지 1개월	사업장 폐쇄 명령
다.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	법 제38조의2 제1항제3호	경고	사업 정지 15일	사업 정지 1개월	사업장 폐쇄 명령
라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의2 제1항제4호	경고	사업 정지 15일	사업 정지 1개월	사업장 폐쇄 명령
마.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	법 제38조의2 제1항제5호	사업장 폐쇄 명령			